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휠체어 접근성, 한국수어·문자·음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면서 호출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8.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2.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생략)	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② ----- ----- ----- ----- . <단서 삭제>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 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2.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③ (생 략)	<u>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 정보단말기</u> 2.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제1항에 따른 <u>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u> 3. 「<u>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u>」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4